

제과점 영업 규제, 잇따른 ‘완화 조치’

영업 허가 신고제로 전환 등 … 사안 따라 불리할 수도

제과점 영업과 관련 그동안 제약을 받아 왔던 각종 규제가 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제과점의 영업 허가 관련 조항 중 일부가 신고제로 전환됐고 영업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했던 조항이 철폐 또는 완화돼 제과점 영업이 한층 수월해졌다.

지금까지 발표된 제과점과 관련된 규제 철폐 및 완화 조치 중 대표적인 것은 ‘영업 허가의 신고제 전환’, ‘영업 시간 제한 철폐’, ‘보건증 갱신 연장 및 휴대 의무 폐지’, ‘유통 기한 자율 설정’, ‘허가없이 시설 변경’, ‘휴업시 신고의무 폐지’, ‘20평 미만 점포의 시설 배치도 제출 폐지’ 등이다.

허가제에서 신고제 전환 등 규제 요소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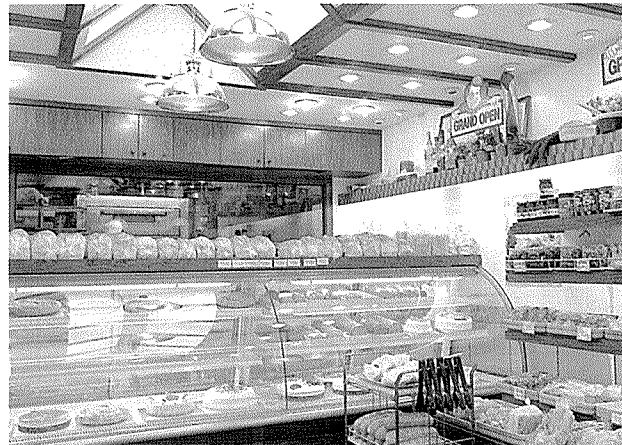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에 의하면 그동안 제과점들은 영업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고제로 바뀐다. 즉 내년부터는 제과점 개업시 필요 서류만 갖춰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면 당일 접수되고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신고 후 즉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제과점 시설 기준은 그대로 존속되며 신규 업주 교육도 원칙적으로 사전 교육을 마치고 신고 당일에 해당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고제로 전환됐으나 영업 개시 후 시설 기준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될 때는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제과점의 영업 시간 제한은 이미 지난 9월 15일 철폐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고 과거 제과점 종사자들이 건강 진단을 통해 6개월마다 보건증을 갱신하던 것도 1년에 한번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기존에 제과점 종사자가 보건증을 휴대하도록 했던 것도 앞으로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밖에 품목별로 유통 기한이 정해져 있던 프랜차이즈 및 제빵 업체 제품의 ‘유통 기한’도 해당 업체가 자율적으로 이를 설정하도록 변화됐다.

한편 지난 11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완화 조치 결과 그동안 제과점이 기준의 객석 또는 조리장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휴업할 때 시설 변경 허가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제과점 개업시 영업 허가를 얻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매장 또는 조리장의 평면도인 ‘시설 배치도’ 제출 의무도 20평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11월 발표된 규제 완화 조치에는 가정의례법과 관련해 경조사에서 음식물 접대를 금지하는 규제도 풀렸다. 따라서 이 조항이 존속될 경우 결혼식장에서 음식물을 접대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닭っぽ 시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규제가 풀려 베이커리 업계의 닭っぽ 시장 공략은 어렵게 됐다.

영업 허가 신고제 전환 등은 불리할 수도

새 정부 들어 취해진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베이커리 업계는 영업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그동안의 제약이 폐지돼 개업 및 영업 활동이 수월하게 됐다. 그러나 규제 완화 조치 중 ‘영업 허가’가 신고제로 전환되고 ‘시설 변경시 허가’를 받지 않게 된 사항은 오히려 제과점에 불리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영업 개시나 시설 변경은 쉬워졌으나 법적 제재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영업 정지나 영업 허가 취소, 시정 조치가 뒤따르게 돼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제과점 관련 규제 완화 내용

기 준	변 경
영업 허가 필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예정)
오후 12시간까지만 영업	24시간 영업 가능
6개월마다 보건증 갱신	1년마다 갱신
제과점 종사자 보건증 휴대	보건증 휴대 의무 폐지(예정)
유통 기한(식품 제조업 업체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정
시설 변경시 허가 필요	허가 필요 없음(예정)
휴업시 신고 필요	신고 필요 없음(예정)
영업 허가시 시설배치도 제출	20평 미만 점포 제출 필요 없음(예정)